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20가합550501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식

변론 종결 2021. 3. 3.

판결 선고 2021. 4.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가. B와 피고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9. 7. 29.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0. 2.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와 접수 제208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와 B 사이에 113,250,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별지2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56,625,00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56,6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주식회사 C(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C 순서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C'라 한다)와 사이에 C의 대표이사인 B의 연대보증 하에 C가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F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원고가 신용보증을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1	2017. 6. 30.	297,000,000	330,000,000	2020. 4. 9.	173,982,173	
2	2017. 8. 29.	72,000,000	80,000,000	2020. 4. 9.	50,677,062	
3	2018. 3. 22.	891,000,000	990,000,000	2020. 4. 9.	813,544,745	
	합계	1,260,000,000	1,400,000,000		1,038,203,980	

2) C는 위 표 기재와 같은 원고의 보증하에 F으로부터 합계 14억 원을 대출받았다.

3) C는 2020. 3. 6.경 기업회생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가 2020. 4. 9. 위 각 보증으로 인한 연체 대출원리금 합계 1,038,203,980원(= 원금 1,033,650,000원 + 이자 4,553,980원)을 대위변제였다. 한편, 원고는 2020. 4. 9.

3,270,690원을 회수하였고, 이에 대한 확정손해금 716원 및 미수위약금 758,950원을 합하면, C는 원고에게 총 1,035,692,956원(= 1,034,933,290원 + 716원 + 758,950원) 및 그 중 1,034,933,29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B의 부동산 처분행위

1) B과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은 유일한 재산인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9. 7. 29.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와 2020. 2. 24. 접수 제2084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 30. 접수 제14897호로 채권최고액 4억 2,000만원, 채무자 주식회사 G(2009. 5. 21. 주식회사 H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G'이라 한다),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다. B의 증여

B은 별지2 증여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2019. 8. 1.부터 2020. 3. 9.까지 합계 113,250,000원을 증여하였다.

라. C의 회생절차

1) C는 2020. 3. 6.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서울회생법원 2020회합100029)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9. 24. 회생계획을 인가하였고, 2020. 10. 19. 회생절차를 종결하였다.

2) C의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035,889,642원(= 원금 1,033,650,000원 + 개시전 이자 2,239,642원)이 시인되었고, 그 중 662,969,371원이 주식 출자전환, 372,920,271원이 10년에 걸쳐 현금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회생계획안이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G은 그 임원이 피고와 남편 B, 시부모들로 구성된 가족회사이고, B은 2004. 12. 15.부터 G의 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도 2004. 12. 15. 회사 설립시점부터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 3. 9. 비상무이사로 취임하여 2017. 3. 22. 사임하여 가족의 주수입원으로 영위하였던 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채무자 G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피고도 용인한 채무에 해당하여 청산의 대상이 되므로, B과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재산분할계약은 상당성을 초과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재산분할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위자료, 양육비 명목의 증여 합계 113,250,000원 중 1/2를 초과하는 범위인 56,625,000원의 증여는 상당성을 초과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증여계약을 56,625,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6,6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써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0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 별지2 증여내역의 증여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의 2020. 6. 12. 당시의 부동산의 일반평균가는 5억 원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4억 2,000만 원, 2019. 7. 29. 및 2020. 3. 3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4억 5,000만 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는 2020. 6. 12. 당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8,000만 원(= 5억 원 - 4억 2,000만 원) 정도이다.

② G은 2004. 12. 15. 설립되어 B의 아버지인 J가 계속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B과 피고가 설립시부터 2010. 3. 9.까지 G의 이사로 등재되었으며, 2010. 3. 9.부터 2017. 3. 22.까지 기타비상무이사로 등재된 사실, B이 2010. 7. 19. G의 본점 주소지에서 C를 설립하였다가 본점 소재지를 변경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채무자 G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 피고가 혼인생활 중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부부 공동채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B이 2002. 11.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2004. 5. 6.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K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5. 1. 6. G이 계약인수를 하였고,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현재도 G의 대표이사는 J로서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의 G의 담보제공자로 거래조건변경·추가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이는 G의 채무를 물상보증인으로 부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 8,000만 원과 B이 피고에게 증여한 금액 113,250,000원을 합한 193,250,000원은 피고와 B의 재산분할 뿐만 아니라 위자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등도 포함한 금액으로 보이고, 피고와 B의 혼인기간이 19년 가량 되고, 둘 사이의 2001년생, 2003년생 자녀 2명을 이혼 이후 피고가 양육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가 물상보증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주장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으로 위 금액의 1/2을 초과하여 피고가 지급받은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성호

판사정진우

판사박예지

별지